

발간등록번호  
(51-7010000-000151-12)

행복 · 감동 · 보람주는 세/계/일/류/서/울/교/육

# 학교의 자율성 · 책무성 제고를 위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 운영 안내

2010. 2



학교의 자율성 · 책무성 제고를 위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 운영 안내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www.sen.go.kr

<b>제 1 장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과 기능</b> .....	1
I.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 .....	1
II.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	2
<b>제 2 장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b> .....	4
I.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	4
II.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 .....	8
III. 학교운영위원 선출시 주의 사항(재선출 사례) .....	17
<b>제 3 장 학교운영위원회 운영</b> .....	18
I.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내실화 .....	18
II. 학교운영위원회 연수 및 관계자 연수 .....	21
III. 학교운영위원회 홍보 강화 .....	22
<b>제 4 장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법규</b> .....	23
I. 초·중등교육법 .....	23
II. 초·중등교육법시행령 .....	25
III. 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	29
IV. 사립학교 정관 및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사항(예시) .....	34
V. 국·공·사립학교 운영위원회 비교 .....	35
<b>참 고 자 료</b> .....	37
I.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관련 질의·응답 .....	37
II.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 관련 서식(예시) .....	49
<b>학교발전기금 조성 및 운영의 유의사항</b> .....	66



# 제 1 장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과 기능

## I.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

### ▣ 설치 목적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에 학부모, 교원, 지역 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 결정의 민주성, 합리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학교 교육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기구이다.

### ▣ 법적 근거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은 다음의 법규로 규정한다.

- 「초·중등교육법」(법률 제8676호) 제31조~제34조의 2
- 「초·중등교육법시행령」(대통령령 제20116호) 제58조~제64조
- 「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제3772호) : (공립학교)
  - \* 사립학교법인 정관(사립학교)

### ▣ 성 격

- 법정 위원회
  - 국·공립학교 : 심의기구
  - 사립학교 : 자문기구
  - \*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심의·의결(기구)
- 독립된 위원회 :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장(집행기관)과 독립된 기구

## Ⅱ.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 ▣ 초·중등교육법 제32조

- ①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 4의2.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5.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9.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10.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1.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2. 기타 대통령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② 사립학교의 장은 제1항 각호의 사항(제6호의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학교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③ 국·공립 및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 ▣ 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9조

- ① 운영위원회는 법 제32조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규정의 제·개정
  2.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3.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과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학부모, 교직원, 학생, 지역주민으로부터 제출된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 사항
  5.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 ② 법 제32조 제5호의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 학생의 교육활동·수련활동은 인성 및 창의성을 함양하는 교육활동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 ③ 제1항 제4호의 건의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 2 장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 I.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 1. 운영위원회의 구성

##### 가. 운영위원의 정수

- 운영위원의 정수는 5인 이상 15인 이내의 범위 안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교 ‘학교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3항,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학교의 규모	학생수 200명 미만	200명 이상 1,000명 미만	학생수 1,000명 이상
위원의 정수	5인 이상 8인 이내	9인 이상 12인 이내	13인 이상 15인 이내

※ 운영위원 정수 결정을 위한 학생 수 기준일 : 새 임기의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는 해의 3월 1일 (신입학 예정 학생 수 포함)

##### 나. 운영위원 구성 비율

- 학교운영위원의 구성비율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 제2항 내지 제3항, 제63조 제2항의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비율을 준수하여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 운영위원 정수 범례

위원총수 (100%)	학부모위원수 40~50%(30~40%)	교원위원수 30~40%(20~30%)	지역위원수 10~30%(30~50%)	비 고
5	2(2)	2(1)	1(2)	
6	3(2)	2(1)	1(3)	
7	.	.	.	정할 수 없음

위원총수 (100%)	학부모위원수 40~50%(30~40%)	교원위원수 30~40%(20~30%)	지역위원수 10~30%(30~50%)	비 고
8	4(3)	3(2)	1(3)	
9	4(3)	3(2)	2(4)	
10	4~5(3~4)	3~4(2~3)	1~3(3~5)	
11	5(4)	4(3)	2(4)	
12	5~6(4)	4(3)	2~3(5)	
13	6(4~5)	4~5(3)	2~3(5~6)	
14	6~7(5)	5(3~4)	2~3(5~6)	
15	6~7(5~6)	5~6(3~4)	2~4(5~7)	

- ※ 1. 운영위원 정수 7은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구성비율에 맞지 아니하므로 정할 수 없음.  
 2. ( )안의 수는 시행령 제58조 제3항에 따른 전문계고교의 위원정수이며, 이 경우 지역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 선출하여야 함.

## 2. 운영위원의 자격

### 가. 위원의 자격

- 학부모위원 - 당해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 교원위원 - 당해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 지역위원
  -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 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

## 나. 운영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2)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초중등교육법 제31조 2 제2항)

- **정당의 당원인 자**

- 운영위원의 정당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는 자에 대하여 입후보 등록서류 작성 시 반드시 자격확인란을 공지하고 해당란 (예, 아니오)에 ○표 하도록 하고 확인
- 또한, 운영위원으로 선출된 후 정당인의 자격으로 각종 선거 등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운영위원직을 사퇴하도록 공지하고 확인.

「조례」 제5조(위원의 자격) ①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 **타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하고 있는 자**

- 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는 경우 입후보 등록서류 작성 시 반드시 자격확인란을 공지하고 해당란 (예, 아니오)에 ○표 하도록 하고 확인

「조례」 제5조(위원의 자격) ②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 다. 위원의 자격상실 요건(조례 제7조)

-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
-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이 졸업 및 전학·퇴학한 때
-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연락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될 때(단,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한다)

## 3. 운영위원의 임기

### 가. 위원의 임기

- 2년,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음.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함(조례 제4조)
  - ※ 연임 : 현임 운영위원이 자동적으로 차기 운영위원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차기 운영위원으로 선출될 경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의미임.

### 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

- 1년, 연임할 수 있음(조례 제8조 제1항)

## Ⅱ.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

### 1.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범위

- 국·공·사립,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1항)

####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 ①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공립 및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2. 운영위원회 구성 절차

-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개정 →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 선거공고 및 입후보 →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 → 지역위원 선출 → 위원장 선출 → 구성 완료

※ 세부일정(예시)

순	기 한	선출업무 내용	비 고
1	3월 초 까지	규정 제·개정	필요한 경우 의견수렴
2	3월 초	선거 홍보	
3	3. 10 이전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학부모·교원위원 별도 구성
4	선관위 구성 후 ~ 3.14 이전	선거 공고	
5	선관위 구성 후 ~ 3.14 이전	선거인 명부 작성	보존용·열람용·투표용지 교부용
6	3. 13 ~ 3.16 이전	후보자 등록	충분한 기간 확보
7	등록 마감일 ~ 투표 전일	선거 공보	"
8	3.21 이전	학부모·교원위원 선출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까지 선출
9	3.30 이전	지역위원 선출	임기 만료일 전일까지 선출

※ 위 일정은 위원 선출일자를 기준 한 것으로 학교 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

### 3. 운영위원의 선출

#### 가. 위원의 선출 시기(조례 제3조 제2항)

-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선출
- 지역위원 :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

#### 나. 운영위원 선출시 고려할 사항

- 위원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운영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위원이 선출될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를 통하여 참여 기회 확대
- 공정하고 민주적 절차에 의한 선거사무 수행
- 선출 절차의 합리성·공개성 확보

#### 다. 운영위원 선출 절차 및 사무

##### 학부모위원 선출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위원의 선출 등) ②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 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다만, 학교의 규모·시설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 ○ 선출 방법

- 직접선출 :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  
(서신·우편·전자투표 병행 가능)
- 간접선출 : 동법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거 학교의 규모·시설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학부모의 참여율 저조는 사유가 아님)

- 선출시기 :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선출 <조례 제3조 제2항>

- ※ 1. 학부모위원의 선출은 직접투표에 의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학부모의 투표 참여율을 높여 위원의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서신·우편·전자투표 등의 방법을 당해 학교 '학교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하여 병행할 수 있음
2. 학부모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해야 함
3. 학부모위원 수를 학년별로 배정하여 선출하는 경우에도 학년별 학부모회의에서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학부모회의에서 선출해야 함

## 1) 직접선출 (직접투표에 의해 선출하는 경우)

### 1 선거 홍보

- 내용 : ①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목적과 구성, 기능 등 ② 선거일정 ③ 선거 절차 ④ 당선자 결정 방법 ⑤ 학교운영위원회규정 및 선거에 대한 세칙 등
- 방법 : 가정통신문, 학교소식지, 교내게시판, 학교 홈페이지 등 활용
- 홍보 : 충분한 시간과 가능한 여러 수단 동원

### 2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 기능 : 선출의 공정성 확보, 선거 사무 총괄
- 방법 : 당해 학교 '학교운영위원회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의함  
 ※ 예시 : 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학부모 중에 학부모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호선
- 업무 : 선거일정의 관리, 후보자 등록업무, 선거 홍보 및 투·개표의 관리, 당선자 확정 및 공고 등  
 ※ 선출관리위원은 선거권은 있으나 피선거권은 없음.

### 3 선거 공고

- 내용 : 선거일시, 장소, 선출인원, 선출방법, 자격(운영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는 자 반드시 게시), 후보등록에 관한 사항, 선거인 명부열람에 관한 사항 등
- 방법 : 가정통신문, 학교소식지, 교내게시판, 학교 홈페이지 등 활용

### 4 선거인명부 작성

- 작성 : 선거인의 자녀가 속한 학년별로 작성
- 작성부수 : 3부(보존용, 열람용, 투표용지 수령용)
- 관리 : 명부는 일정한 장소에 비치하여 자유롭게 열람하도록 함  
 ※ 1. 당해 학교에 2명 이상의 자녀가 재학하고 있는 경우 어느 한 자녀를 기준으로 명부 작성  
 (예 : 최상급 학년의 자녀, 타 자녀는 비고란에 사유 표시)  
 2. 부·모 중 1인이 1표만 행사

## 5 후보자 등록

- 등록 : 입후보 등록서 1부를 작성하여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
- 서식 : [서식1-2] 참조
  - ※ 후보등록 마감 시간을 선거공고 등을 통하여 사전에 홍보

## 6 선거공보

- 내용 :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에 관한 사항(이름, 나이, 성별, 경력 및 소견 등), 선거에 관한 사항(선거일시, 장소, 방법, 지참물 등)
- 서신 또는 우편 투표를 병행하는 경우 선거 공보물 발송 시 반송용 투표용지·봉투 동봉 발송
- 방법 : 가정통신문, 학교소식지, 교내게시판, 학교홈페이지 등 활용

## 7 투표용지 준비 및 투표장 설치

- 투표용지 : 학년별로 작성, 투표용지에는 후보자 기호, 성명 및 기표란이 기재된 용지
- 위원장 사인 : 투표용지에는 위원장의 사인이 있어야 함
- 투표장 : 투표 순서, 기표방법을 안내하는 표지판 설치와 기표 용구 등 준비

## 8 투표 실시

- 소견발표 : 선거당일 투표 전에 입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하도록 함
- 투표절차 : ① 선거인 명부 확인 및 날인 → ② 투표용지 수령 → ③ 기표 → ④ 투표함 투입
  - ※ 1. 소견발표 장소 : 동일 장소에 전체 학부모가 모일 수 없을 경우 학교 사정에 따라 방송을 통해 분산된 장소에서 실시 가능
  - 2. 투표 개시 및 마감 시간을 선거공고 등을 통하여 사전에 홍보

**9**      **개 표**

- 시기 : 투표가 완전히 끝나면 위원장은 투표마감을 선언하고 개표 선언 후 개표
- 개표 :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책임 하에 실시하고 참관인이 임석
- 서신 또는 우편 투표를 병행하는 경우 먼저 서신 또는 우편 투표로 회송된 투표용지를 개표

**10**      **당선자 공고**

- 당선자 : 다수득표자 순으로 당선자를 확정하고 결과를 공포
- 공고 : 개표결과를 선출관리위원회 선거록에 기록하고 당선 사실을 공고

**11**      **선거결과 홍보**

- 방법 : 선출관리위원장이 당선자에게 ‘당선통지서’를 교부하고 선거결과를 가정통신문, 학교소식지, 학교게시판, 학교홈페이지 등을 활용

**2) 간접선출 (학급별 대표에 의해 선출하는 경우)**

- ※ 1.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간접선출 불가
- 2. 학부모위원 수를 학년별로 배정하여 선출하는 경우에도 학년별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해야 함

**1**      **선 거 흥 보**

~

**5**      **후보자 등록**

※ ‘직접선출’ 1~5와 동일

**6**      **대의원회 구성**

- 방법 : 당해 학교 ‘학교운영위원회규정’에 의함  
(예시 : 학급별로 학부모가 학급 대표를 선출)
- ※ 학급별 학부모회의에서 선출된 학급대표자(선거인단)도 학부모위원 후보로 입후보할 수 있음

## 7 선거공보 ~

## 8 투표용지 준비 및 투표장 설치

※ '직접선출' 6~7과 동일

## 9 투표 실시

- 소견발표 : 선거당일 투표 전에 입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하도록 함
- 투표절차 : ① 대의원 선거인 명부 확인 및 날인 → ② 투표용지 수령 → ③ 기표 → ④ 투표함 투입

## 10 개 표 ~

## 12 선거결과 홍보

※ '직접선출' 9~11과 동일

## 교원위원 선출

## 1) 국·공립학교

-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 제3항>
- 선출시기 :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선출 <조례 제3조 제2항>
- 교직원 범위
  - 교원, 정규 공무원
  - 기간제교원 : 피선거권은 없으나, 선거권은 당해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함

## 1 선거홍보

- 내용 : ①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목적과 구성, 기능 등 ② 선거일정 ③ 선거절차 ④ 당선자 결정 방법 ⑤ 학교운영위원회규정 및 선거에 대한 세칙
- 방법 : 학교계시판, 교무실 등 활용
- 홍보 : 충분한 시간과 가능한 여러 수단 동원

## 2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 기능 : 선출의 공정성 확보, 선거 사무 총괄
- 구성 : 당해 학교 ‘학교운영위원회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의함  
(예시 :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교원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은 교원 중에서 추천하여 학교장이 위촉, 위원장은 호선)  
※ 선출관리위원은 선거권은 있으나 피선거권은 없으며, 선출관리위원회는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음.

## 3 선거 공고

- 내용 : 선거일시, 장소, 선출인원, 선출방법, 자격, 후보등록에 관한 사항, 선거인 명부 열람에 관한 사항
- 방법 : 학교계시판, 교무실에 공고

## 4 선거인명부 작성

- 작성부수 : 3부(보존용, 열람용, 투표용지 수령용)
- 관리 : 명부는 일정한 장소에 비치하여 자유롭게 열람하도록 함

## 5 후보자 등록

- 등록 : 입후보등록서 1부를 작성하여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
- 서식 : [서식1-10] 참조

## 6 선거 공보

- 내용 : 교원위원 입후보자 및 선거에 관한 사항, 입후보자의 소견 등
- 방법 : 학교계시판, 교무실에 공고

## 7 투표용지 및 투표장

- 투표용지 : 투표용지에는 후보자 기호, 성명 및 기표란이 기재된 용지
- 위원장 사인 : 투표용지에는 위원장의 사인이 있어야 함
- 투표장 : 투표순서, 기표방법을 안내하는 안내문, 기표용구 등 준비

## 8 투표 실시

- 소견발표 : 선거당일 투표 전에 입후보자의 소견 발표
- 투표절차 : ① 선거인 명부 확인 및 날인 → ② 투표용지 수령 → ③ 기표  
→ ④ 투표함 투입
- ※ 투표방법(단기명 또는 연기명)을 「학교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할 필요 있음

## 9 개 표

- 시기 : 투표가 완전히 끝나면 위원장은 투표마감을 선언하고 개표 선언 후 개표
- 개표 :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 책임 하에 실시하고 참관인이 임석

## 10 당선자 공고

- 당선자 : 다수득표자 순으로 당선자를 확정하고 결과를 공포
- 공고 : 개표결과를 선출관리위원회 선거록에 기록하고 당선 사실을 공고

## 11 선거결과 홍보

- 홍보 : 가정통신문, 학교소식지, 교내게시판, 학교 홈페이지 등 활용

## 2) 사립학교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 중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3조 제2항)

- 교직원 범위
  - 교원, 정규직원
  - 기간제교원 : 피선거권은 없으나, 선거권은 당해 학교 ‘학교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함
- 후보자 추천 방법 : 민주적 절차와 방법에 의함
- 후보자 추천 배수 :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는 적절한 범위(예 : 2배수)

### 지역위원 선출

-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 제4항)
- 선출시기 :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조례 제3조 제2항)

#### ○ 지역위원 선출 시 고려사항

- 당해 학교 '학교운영위원회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운영위원의 정수 중 지역위원의 수 고려
- 지역위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 자격 확인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제외
  - 정당인 배제
  - 다른 학교 운영위원을 겸하고 있는 자 제외
- 학교와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여 지역위원 선출
- 지역위원 후보자에게는 사전에 학교발전을 위한 무보수 봉사직임을 공지
- 지역위원은 일부학교에서 회의불참, 공석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사례가 있으므로 위원으로 계속 활동할 수 있는 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학부모위원, 교원위원의 협의 필요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 제5항)
  - ※ 후보자가 1인이더라도 반드시 투표 절차를 거쳐 선출.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조례 제8조 제2항)
-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조례 제8조 제3항)

## Ⅲ. 학교운영위원 선출시 주의 사항(재선출 사례)

### 1. 교원위원의 피선거권 제한

교직경력 0년 이상 또는 본교 재직경력 0년 이상 등 일부 교원의 피선거권을 제한 할 수 없음

※ 당해 학교 '학교운영위원회규정'에 명시한 경우만 해당

### 2. 학부모위원 선거권 제한

학부모회장, 어머니회장 등 학교 자생단체 및 조직의 장을 당연직 학부모위원으로 정하여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없음

### 3. 위원 선출 공고 미실시

- 학교게시판 외 별도의 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
- 학부모회 소집을 가정통신문을 통해 알렸더라도 위원선출 여부를 알리지 않은 경우 등

※ 가정통신문 등의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 4. 부적절한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 선출관리위원회 미구성 또는 뒤늦은 구성 (후보 등록 후 구성 등)
-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절차의 문제(규정에 어긋나는 구성) 등

※ 학부모위원 선출을 위한 선출관리위원회 구성을 위해 학부모회의 추천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등

### 5. 적절한 절차를 밟지 않은 규정 개정

- 운영위원 선출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치지 않고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개정한 경우

※ 학교운영위원 불법선거 접수창구 운영

- 서울특별시교육청 : 학교지원과(☎ 3999-429)
- 지역교육청 : 각 지역교육청 초등교육과

## 제 3 장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 I.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내실화

#### 1. 학교운영위원회 연간 활동 계획 수립

- 매년도 학교교육과정운영계획에 의한 심의·자문사항을 월별 일정표로 작성하여 연간 심의·자문 및 활동계획을 수립 운영
- 운영위원 및 교직원 자체 연수시 월별 일정표를 배부하여 안건의 심의·자문사항 누락 방지
  - ※ 법정 필수 심의·자문사항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 2. 회의 개최 안내 및 심의 자료 제공

- 회의 개최 7일전 안내문 발송 및 회의 내용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
- 회의 개최 안건의 이해를 돕는 적절한 자료 제공

#### 3. 회의시간·장소의 탄력적 운영으로 참석률 제고(학부모, 지역위원)

-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선택하여 회의를 소집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참석률 제고
- 학부모위원이 학교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가급적 독립된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실을 우선적으로 확보

#### 4. 심의·자문사항 이행 철저

-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자문을 지연하거나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운영
- 심의·자문내용이 법령 위배 및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운영

-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0조제2항에 의한 사유로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 보고
-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자문된 사항을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학교 운영에 반영하지 않거나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교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보고
  - ※ 관할청은 동법 시행령 제61조(시정명령)에 의거 학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운영위원회 심의·의결 결과를 시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음

## 5.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참관제 운영

-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학교구성원, 지역주민, 동문 등이 학교운영위원회를 참관함으로써 학교교육에 대한 관심도 및 참여도 제고
- 학교구성원에 대한 알 권리 충족과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도 제고
- 학교홈페이지, 가정통신문, 학교소식지, 동문회보 등을 활용하여 참관률 극대화

## 6. 안전 심사의 전문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소위원회 운영

- 안전의 실질적이고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학교 실정에 알맞은 다양한 소위원회 구성·운영
  - ※ 예·결산소위원회, 교육과정소위원회, 앨범선정소위원회, 방과후학교운영 소위원회, 교복 및 체육복 선정소위원회, 급식소위원회 등

## 7.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작성

### 가.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

- 운영위원회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 회의록도 작성할 수 있다.

## 나. 회의록 작성방법 : 「속기에 의한 회의록」 과 「약식 회의록」

- 「속기에 의한 회의록」은 회의진행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항을 한마디도 빠짐없이 기록하는 방법이며, 「약식 회의록」은 회의경과 및 결과에 중점을 두어 회의진행 과정 요약 기록
- 기록의 편의를 위해 약식 회의록을 사용하는 경우, 발언의 중요한 내용을 빠뜨리거나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특히 유의
-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발언내용을 녹취하여 약식 회의록을 보충하는 것이 좋음.

## 다. 회의록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

○ 개의 일시 및 차수	○ 회의 중지 및 산회 일시
○ 의사일정 및 부의된 안건과 그 내용	○ 출석 위원의 성명과 수
○ 출석 교직원의 성명과 직위	○ 서면 질문과 답변
○ 각종 보고사항	○ 위원의 발언 보충서류
○ 표결결과 및 기명투표의 투표자 성명	○ 개회식에 관한 사항
○ 각종 보고서 제출 현황	
○ 의안의 발의, 제출, 회부, 환송, 이송, 철회에 관한 사항	

- 발언 위원이나 기타 위원이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참고가 되는 필요한 자료 등을 회의록에 기재할 것을 요청하고, 이를 회의록에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회의록에 기재할 수 있다.

## 라. 기 타

- 작성된 회의록에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 날인
- 회의록 공개.
  - ※ 위원장이나 위원회의 결정으로 비공개하기로 한 부분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단, 비공개 회의록이라도 위원이 열람을 신청한 때에는 공개할 수 있음.

## Ⅱ. 학교운영위원회 연수 및 관계자 연수

### 1. 목적

- 2010학년도 3월 학교운영위원회 선출에 따른 관계자 연수의 체계적 연수 필요
-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학교교육공동체 참여의식 제고
- 학교운영위원의 자질과 직무수행능력 향상
-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과 연수·홍보

### 2. 연수 등을 통한 운영위원 전문성 제고

- 운영위원회 연수시 운영위원회에 대한 기능과 역할 홍보
- 운영위원회 길라잡이 수첩 제작·배부
- 실질적인 심의·자문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심분야에 대한 집중·자율 연수 실시
  - ※ 교육과정운영, 학교회계 분야에 대한 집중연수 실시  
(예·결산, 교육과정 운영, 도서·자료 선정, 학교급식, 방과후 학교, 대입추천, 교복 및 체육복앨범 선정, 야영·수련활동, 학교발전기금, 회의진행 요령 등)
- 운영위원 경력에 따른 수준별 연수 및 사이버연수를 통한 자율연수
- 운영위원 맞춤형 선택 연수(연 2회)
  - 심의사항 주제별, 선택형 연수

### 3. 운영 내실화 방향

- 내실있는 연수를 위한 연수 홍보물 제작·보급
- 2010년 3월 학교운영위원의 선출(공립8기, 사립6기)에 앞서 단위학교의 행정 실장, 교감을 대상으로 민주적이고 적법한 절차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을 위한 연수 실시(2월중 실시)
- 운영위원장 및 학부모·지역위원 연수를 적기에 실시하여(4월중 실시) 연수 효과의 극대화 도모
- 각종 연찬회·연수·회의시 연계 실시 및 자체 직장교육을 통한 연수

### Ⅲ. 학교운영위원회 홍보 강화

#### 1. 본청·지역교육청·단위학교 홈페이지 활용

- 학교운영위원 구성
  - 자격, 입후보 방법, 공약 사항, 선거 방법, 당선 결과 및 당선자 현황 등 탑재
-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 회의 개최, 회의 안건, 회의 결과, 운영 상황 등
- 학교운영위원 및 교직원 연수
  - 학교운영위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심의 사항별, 취약 분야별 연수 자료 탑재
  - 우수·미담사례 탑재
- 참여도 제고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한 홈페이지 활성화
  - 회의시간·장소의 탄력적 운영으로 참석율 제고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 매뉴얼』 등 자료 탑재

#### 2.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우수 사례 발굴 홍보

- 위원회 운영 우수 사례집 발간 : 2010. 11월말 까지
  - ※ 우수사례 발굴시 운영위원 선출 관련 자료, 회의 개최 안내, 회의자료·회의 결과 탑재 등 체계적인 홈페이지 홍보에도 비중을 두어 선정
- 홍보책자, 유인물 제작 배포
  - 가정통신문, 학교소식지, 학교홈페이지, 운영위원회 회보 등
- 지역사회 및 학부모단체 등과 연계하여 홍보
  - 학교별 학부모단체, 학부모 교육 등을 통한 홍보
-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 지역교육청 소식지, 행정구청 소식지 등
  - 일간지, 지역신문, 교육전문지 등을 통한 홍보

# 제 4 장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법규

## I. 초·중등교육법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공립 및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당해 학교의 교원대표·학부모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

③ 국·공립 및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는 5인 이상 15인 이내의 범위 안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 2(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신설 2002. 8.26)

**제32조(기능)** ① 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현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 4의2.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9. 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10.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1.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2. 기타 대통령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사립학교의 장은 제1항 각호의 사항(제6호의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③ 국·공립 및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제33조(학교발전기금)** ①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및 운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 중 국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②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4조의2(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등)** ① 교육감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자질과 직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연수를 연수기관 또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연수를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Ⅱ.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국·공립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중 국·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이하 제62조까지 "국·공립학교"라 한다)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안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1. 학생수가 200명 미만인 학교 : 5인 이상 8인 이내
2. 학생수가 20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학교 : 9인 이상 12인 이내
3. 학생수가 1천명 이상인 학교 : 13인 이상 15인 이내

②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 내에서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1. 학부모위원(당해 학교의 학부모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 100분의 40 내지 100분의 50
2. 교원위원(당해 학교의 교원을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40
3. 지역위원(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 100분의 10 내지 100분의 30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8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의 전문계고등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 내에서 위원회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 선출하여야 한다.

1. 학부모위원 :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40
2. 교원위원 : 100분의 20 내지 100분의 30
3. 지역위원 :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50

④ <삭제 >

- 제59조(위원의 선출 등)** ① 국·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 ②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다만, 학교의 규모·시설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 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 ③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 전체 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 ④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 ⑤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 제60조(운영위원회의 심의 등)** ① 국·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국·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법 제32조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 ③ 국·공립학교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61조(시정명령)** 관할청은 국·공립학교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32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심의·의결 결과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없이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을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62조(조례 등에의 위임)**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63조(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 ①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이하 이 조에서 "사립학교"라 한다.)에 두는 운영위원회(이하 "사립학교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당해 학교의 교원위원·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58조·제59조·제60조 제2항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은 사립학교 운영위원회 위원들의 정수·선출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되,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 중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국·공립학교"는 "사립학교"로, "심의"는 "자문"으로 본다.

③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자문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④ 관할청은 사립학교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32조 제3항의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심의·의결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는 경우 또는 심의·의결의 결과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없이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 사립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4조(학교발전기금)** ①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조성한다.

1.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의 접수
2.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내·외의 조직·단체 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각출하거나 구성원 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의 접수

② 발전기금은 다음 각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

1.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2.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3.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4.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③ 운영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기금을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조성·운용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발전기금의 관리 및 집행과 그 부수된 업무의 일부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학교의 장은 발전기금을 별도 회계를 통하여 관리하고, 매분기마다 발전기금의 집행계획 및 집행 내역을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⑥ 운영위원회는 제5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⑦ 운영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기금에 관한 업무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발전기금의 집행상황 등에 관하여 감사할 수 있다.
- ⑧ 운영위원회는 학교의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 관할청에 보고하고,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⑨ 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 Ⅲ. 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이하 "령"이라 한다)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 (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8.11.10)

**제2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범위)** ① 서울특별시립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에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개정 98.11.10)

② 삭제(2000. 7.25)

③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운영위원회는 당해 학교가 설치된 고등학교의 운영위원회로 대체한다.(개정 98.11.10)

**제3조 (위원의 선출 등)** ① 학부모위원은 전체 학부모가 총회 또는 서신을 통해 직접 선출하며 교원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다만, 학부모위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 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개정 2000.7.25)

②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③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선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3월 미만인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0.7.25)

④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개정 2000.7.25)

⑤ 제4항의 선출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②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6조 (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위원의 자격상실)** ①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98.11.10)

-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
  - 2.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의 졸업 및 전학·퇴학한 때
  - 3.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연락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 4.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 ② 제1항 제4호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한다.(개정 98.11.10)

**제8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영 제59조 제5항에서 규정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개정 98.11.10)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 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98.11.10)
-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 (심의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법 제32조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도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98.11.10)

- 1. 학교규정의 제·개정
- 2.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 3.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과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 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학부모, 교직원, 학생, 지역주민으로부터 제출된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
  5.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 ② 법 제32조 제5호의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 학생의 교육 활동·수련활동은 인성 및 창의성을 함양하는 교육활동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개정 98.11.10)
- ③ 제1항 제4호의 건의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개정 98.11.10)

**제10조(건의사항 처리)** ① 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 ② 건의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 ③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8.11.10)
- ④ 위원장은 건의의 처리 결과를 건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전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회의소집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 소집시기는 규정으로 정한다.

- ②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의안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회의는 연 8회 이상 개최하되 회의일수는 연 2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00. 7.25)
- ④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택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3조(의안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14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삭제 (98.11.10)

**제15조(회의 공개원칙)**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지체없이 각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98.11.10)

**제16조(회의록 작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말에 예·결산 내용을 포함한 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및 관할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소위원회의 설치)** ① 운영위원회는 안전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종류 및 이의 운영을 위한 절차 등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8조(간사)**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직원 중 상위 서열의 직원을 당연직 간사로 한다. 다만, 행정직원이 없는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98.11.10)

**제19조(운영경비)** 위원의 연수시 교통비, 회의 경비에 필요한 운영경비는 규정 또는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으로 정한다.

**제20조(학교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 내외의 자생조직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둘 수 있되,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제21조(교육청의 지원·지도)** ① 교육감 및 교육장은 운영위원회가 그 설치 취지 및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 교육감 및 교육장은 운영위원회에 대하여 조언, 권고, 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삭제 (98. 11. 10)

**제22조(위임규정)**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 부 칙 (1996. 5. 10)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최초의 위원 임기개시 및 만료)**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제28조제2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6년 4월 1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최초의 규정)**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제정되는 규정은 교원 전체회의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다만, 이때 제정되는 규정은 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제4조 (최초의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최초의 학교운영위원회는 조례 공포 후 30일 이내에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위원이 선출된 직후부터 15일 이내에 학교장이 소집한다.

### 부 칙 (1998. 1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00. 7.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Ⅳ. 사립학교 정관 및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사항(예시)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34조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제5항에 의하여 그 구성에 관한 사항 중 시행령에 정하지 않은 사항과 기타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정관에 정하고, 시행령에 직접 규정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와 비율, 그리고 정관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해 학교 ‘학교 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정관’으로 정할 사항	‘학교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할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li> <li>□ 학교운영위원회 기능</li> <li>□ 위원의 선출 시기 및 방법</li> <li>□ 위원의 선출 절차</li> <li>□ 위원의 임기 및 개시일</li> <li>□ 위원의 자격</li> <li>□ 위원의 의무</li> <li>□ 위원의 자격상실</li> <li>□ 위원장 및 부위원장</li> <li>□ 위원회 간사제도</li> <li>□ 회의 및 회의 소집</li> <li>□ 소위원회 설치</li> <li>□ 건의사항 처리</li> <li>□ 안전 발의 및 처리</li> <li>□ 서류제출 요구</li> <li>□ 회의 공개</li> <li>□ 회의록 작성</li> <li>□ 자생조직</li> <li>□ 운영경비</li> <li>□ 규정예외의 위임</li> <li>□ 부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운영위원회의 목적</li> <li>□ 학교운영위원회 기능</li> <li>□ 위원의 임기 및 개시일</li> <li>□ 위원의 자격 및 의무</li> <li>□ 위원의 자격상실</li> <li>□ 위원의 정수 및 비율</li> <li>□ 위원 선출일</li> <li>□ 선출관리위원회</li> <li>□ 위원 선출 방법</li> <li>□ 임원</li> <li>□ 소위원회 및 자생조직</li> <li>□ 사무처리 부서</li> <li>□ 회기</li> <li>□ 의안의 제출·발의</li> <li>□ 의사 및 의결 정족수</li> <li>□ 회의 공개</li> <li>□ 회의록 작성</li> <li>□ 서류제출 요구</li> <li>□ 건의사항 처리</li> <li>□ 심의사항 통보</li> <li>□ 시행의무</li> <li>□ 운영경비</li> <li>□ 규정의 개정</li> <li>□ 부칙</li> </ul>

※ ‘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의 규정사항에 준하여 규정

## V. 국·공·사립학교 운영위원회 비교

구 분	국·공립학교		사립학교
성 격	법정 심의기구		필수적 자문기구
위 원 정 수	학생수 200명 미만	5인 이상 8인 이내	국·공립학교와 같음
	학생수 200명 이상 1천명 미만	9인 이상 12인 이내	
	학생수 1천명 이상	13인 이상 15인 이내	
위 원 선 출 방 법	학부모 위 원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국·공립학교와 같음
		국·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국·공립학교와 같음
	교 원 위 원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 중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지 역 위 원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구 분	국·공립학교	사립학교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현장 및 학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li> <li>○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li> <li>○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li> <li>○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li> <li>○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li> <li>○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li> <li>○ <b>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 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b></li> <li>○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li> <li>○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li> <li>○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li> <li>○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li> <li>○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li> <li>○ 기타 대통령령, 특별시·광역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선택사항</b></p> <p style="text-align: center;"><b>제외</b></p>
	○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	국·공립학교와 같음
보고 의무	○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보고	
시정 명령	<p>근거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1조</p> <p>관할청은 국·공립학교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32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심의·의결 결과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없이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을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p>	<p>근거 : 시행령 제63조 제4항</p> <p>관할청은 사립학교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32조 제3항의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심의·의결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는 경우 또는 심의·의결의 결과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없이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p>

# 참 고 자 료

## I.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관련 질의·응답

**문**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는 어떤 차이점이 있으며, 두 조직의 관계는?  
또한 학부모회 임원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겸임은 가능한가?

**답** 두 조직은 설치목적, 설치근거, 성격, 구성원 등에서 차이가 있다. 학교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정책결정의 민주성, 합리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심의·자문기구로서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에 근거하고 있는 법정 기구이며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학부모회는 학교교육활동을 위한 지원,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학부모의 자율조직으로, 그 설치근거는 「학부모회규약」이며, 학부모들이 모여 학부모회 활동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 집행하는 의결·집행 기구이다.

이처럼 설치목적과 성격면에서 근본적인 차이는 있으나, 학교의 교육 목표의 달성을 위해 지원하고 노력하는 기구라는 점에서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는 학교의 발전을 위해 서로 긴밀히 협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구체적인 상호 관계는 개별학교의 자율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학부모회가 학교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되어 있는 경우라도 이는 학교운영위원회가 학부모회를 '지휘·감독'한다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회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만약 동일사안에 대하여 두 기구의 결의내용이 상충하게 되면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내용이 우선한다.

학부모회 회원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겸임이 가능하며, 학부모회와 학교운영위원회 사이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다만, 학부모회규약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선출된 회원이나 기존의 학부모회 임원을 학교운영위원회 당연직 학부모위원으로 하는 것은 위법이다. 법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민주적 선출절차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 일반계 고등학교의 위원 구성비율을 적용하여 위원을 선출·구성한 전문계 고등학교에서 중도에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을 통해 전문계 고등학교의 위원 구성비율을 적용하여 학교운영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할 수 있는가?

**답**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정수는 '학교운영위원회규정'에 위임되어 있고, 학교운영위원회는 이 규정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정할 수 있으므로 상위 법령에 정한 범위 내에서 위원정수 및 구성비율 개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미 정당한 절차에 의해 선출된 위원이 가지고 있는 위원 신분에 대한 신뢰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다. (명확한 경과조치 필요).

**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 제2항의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전문계 고등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구성비율에 대한 의무 조항인가?

**답**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 제2항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비율에 대한 일반조항이며 동 시행령 제58조 제3항은 전문계 고등학교의 특성을 고려한 특례조항이다. 따라서 전문계 고등학교의 경우 특례조항을 둔 취지를 감안하여 동 시행령 제58조 제3항에 의한 위원 구성비율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학교운영위원회규정으로 위원 구성비율을 일반조항인 동 시행령 제58조 제2항에 따라 정할 수도 있다.

**문** 선거권, 의결권을 타인에게 위임할 수 있는가?

**답** 선거권 또는 의결권은 본인의 직접 행사를 원칙으로 하는 바, 상법 제368조 제3항, 민법 제73조 제2항 등과 같이 위임에 관한 명백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타인에게 위임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문** 선출관리위원의 자격은? 또한 운영위원 후보를 겸할 수 있는가?

**답** 선출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율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규정에 정하여진 대로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선출관리위원회의 목적과 기능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즉,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정의 관리, 후보자 등록, 선거홍보, 개표 진행 등 선거사무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구성·운영되는 기구임을 감안하여 피선거권이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선출관리위원의 피선거권 제한은 선출관리위원이라는 자격에 대한 제한을 의미하므로 선출관리위원에서 사퇴하면 입후보 할 수 있다.

**문** 교원선출관리위원회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가?

**답**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홍보, 입후보자 등록, 투·개표관리 등 선거 지원 업무를 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선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는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문**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기간제교원이나 정규공무원도 선출관리위원이 될 수 있는가?

**답** 정규공무원은 가능하며, 기간제교원은 당해 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상 선거권이 있을 경우 가능.

**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 제2항에 위원의 구성비율을 정하고 있는 바, 단위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정 시 교원위원의 구성비가 28.5%로 정하고 있다면 이의 적법성 여부는?

**답** 일반적으로 사람의 수를 계산할 때 정수로 산정하나 시행령의 30-40%는 교원위원의 비율을 정해놓은 것으로서 교원위원의 비율은 이의 범위에 들어야 할 것이므로 교원위원의 구성비율이 28.5%인 것은 위법이다.

**문** 교원위원의 선출을 직급별, 남녀별 혹은 연령별로 할 경우 투표도 직급별, 남녀별 또는 연령대별로 구분하여 따로 해야 하는가?

**답** 정해진 교원의 정수 중에서 직급별, 남녀별 또는 연령대별로 할당하는 것은 직능대표 혹은 직급대표를 뽑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직급이나 구성 단위별로 의견 수렴을 조화롭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투표 시 직급별 또는 남녀별로 따로 나누어 투표를 실시한다면 시행령의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는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다 (시행령 제59조 제3항 참조)

**문** 정직처분을 받은 교원 또는 휴직이나 타 기관 파견근무 중인 교원에게 교원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는가?

**답** 조례에서 교원위원의 자격상실 요건으로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할 때'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직처분을 받은 교사, 휴직중인 교사 그리고 파견근무 중인 교사도 당해 학교에 소속하고 있으므로 이미 선출된 경우의 교원위원의 자격은 유지된다고 할 수 있다. 사례를 살펴보기로 하자.

정직은 징계처분의 일종으로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동안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므로 교원위원인 자가 정직처분을 받으면 교원위원의 자격은 유지되나 교원위원으로서의 직무는 그 기간동안 정지된다. 따라서 정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공직수행에 제한을 받게 되므로 위원의 피선거권 및 선거권이 제한된다. 휴직 중인 공무원도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므로 교원위원인 교사가 휴직을 하게 되면 위원의 자격은 유지되나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은 정지된다. 교원위원인 교사가 장기에 걸쳐 휴직을 하게 되는 경우 교원위원직을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파견근무는 신분상의 소속에는 변동이 없이 근무만 파견받은 기관에서 하게 되므로, 교원위원인 교사가 교육청 등 타 기관에 파견근무하게 되어도 교원위원의 자격은 상실되지 않는다. 다만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7조 제1항이 "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견 중인 교원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파견 근무 중인 교원위원도 스스로 사퇴하여 다른 교사로 하여금 학교운영에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 기간제교사 및 원어민 교사에게도 교원위원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는가?

**답** 기간제교사는 정규교원이 아니고,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항’에 의해 책임이 무거운 감독직위에 임용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학교운영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게 될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의 피선거권을 가지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간제교사는 정규교사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교원자격증 소지자 중 임용된 교사로서 근무상으로는 정규교사와 다를 바가 없으므로 ‘전체교원의 동의를 얻어’ 선거권을 주는 것은 무방할 것이다. 한편 원어민 교사는 신분이 ‘강사’이고,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가 아니며 우리나라에서 법령으로 정한 교원자격증 소유자가 아니므로 기간제교사에 상당하는 교원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어민 교사에게는 교원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다.

**문** 병설유치원 교사의 교원위원 선거권, 피선거권 여부는?

**답**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는 국·공립 및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므로 유치원에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그에 속한 교사도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없다.

**문** 사립학교 정관에서 “교원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2배수를 추천한 자 중 학교장이 위촉한다.”라고 규정한 경우 위법인지, 그리고 교직원회의에서 추천한 자 중 다수 득표한 교원을 학교장이 위촉하지 않는 것이 위법인지의 여부는?

**답** 사립학교의 교원위원 선출 방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3조 제2항에서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 중 학교의장이 위촉한다.”로 규정되어 교원위원선출에 관한 절차 및 추천배수 등에 대해서 사립학교법인 정관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위법하지 않다. 그리고 학교장이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 중 추천자의 득표순위와 달리 위촉하였다 하더라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

**문** 교원노조 전임자가 학교운영위원으로 선출되어 활동할 수 있는가?

**답** 교원노조법 제5조 제1항의 “교원은 임용권자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는 규정은 노동조합의 업무 이외의 모든 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교원으로서 제공하여야 할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이므로 교원노조 전임자는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당해 소속학교 제외)으로 선출되어 활동할 수 있다.

**문** 공무원이 학교운영위원으로 선출된 경우의 겸직허가 및 회의 참석 시 복무에 대한 처리는?

**답** 공무원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6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나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및 행정의 효율성 도모를 위해 소속공무원이 학교운영위원으로 선출된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의거 사전에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일괄 간주처리하며, 학교운영위원으로 선출된 공무원이 회의 등에 참석할 때의 복무는 소속 기관 자체의 공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연가(조퇴, 외출) 사유에 해당된다.  
<근거 : 학교운영지원과-4702, 2008.3.4>

**문**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학부모위원의 자격상실 시기는?

**답** 학생의 신분은 입학·전입·복학 등에 의하여 시작되고 졸업·전출·퇴학 등에 의해 종료되므로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학부모위원의 자격은 당연히 상실된다.  
이 경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한 보궐선출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임기만료 및 결원 수 등 보궐선출 요건을 판단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동시에 결원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임시회를 소집하여 위원중 1인으로 하여금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여 임시위원장을 선출하여 잔여 임기동안 활동하도록 하여야 한다.

※ 학교운영위원의 자격상실 사유

구 분	자 격 상 실 사 유	공 통 사 유
교원위원	○소속을 달리한 때	○3회 이상 회의 불참 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정당의 당원인 경우
학부모위원	○자녀학생의 졸업, 전학 및 퇴학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 자료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지역위원		

**문** 학부모위원의 자격제한은 가능한가?  
또한 교원위원의 자격(성별, 연령, 경력 등)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한가?

**답** '당해 학교의 학부모'이면 누구나 학부모위원으로 입후보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 법률 및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자격제한 규정을 두어 학부모위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다. 한편 교원위원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과 「조례」에 의하면 위원선출 등에 관한 일부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규정'에 위임되어 있다. 따라서 학교의 실정에 따라 위원의 고른 분포를 위해 남녀별·연령별·경력별·직급별로 교원위원의 구성비율을 정하거나 일정요건을 갖추도록 기준을 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기준은 '전체교원의 합의'를 바탕으로 헌법의 평등권에 위배되지 않는 합리적 기준이라야 할 것이며 특정분야의 교사들에 대해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안 된다.

**문** 직접투표로 학부모위원을 선출하는 경우 투표참석자가 전체 학부모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해도 선출의 효력이 있는가?

**답** 관련법에 선출유효성 인정을 위한 최소 정족수 제한사항이 없으므로, 적법절차를 준수하는 바탕 위에서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재적 학부모수의 과반수 미만이 참여하여 선출하였더라도 대표성 확보는 미흡하나 선출결과의 법적 효력에는 흠이 없다.

**문** 교원위원과 학부모위원의 수가 같을 수도 있는가?

**답** 교원위원을 최대비율인 40%로 하고 학부모위원을 최소비율인 40%로 할 때 교원위원과 학부모위원의 수가 동일할 수도 있다.

**문** 학부모위원 선출을 위한 후보자 등록기한 만료 시까지 후보자가 없거나 정수에 미달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답** 첫째, 후보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등록 공고를 다시 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입후보의 방법과 절차에 대한 홍보를 하여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 하나의 방안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가 후보자를 추천하여 학부모회에서 후보자 없이 투표하게 하여 다수 득표순으로 결정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당선자가 동의하여야 한다는 점과 자발적 의사 없이 당선된 자가 적극적으로 임무와 책무를 수행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둘째, 후보자가 정수에 미달하거나 정수와 일치하는 경우 현행법규가 무투표당선을 금지하고 있지 않는 한 무투표 당선을 인정해야 할 것이며 다만, 후보자가 정수에 미달하지만 시행령이 정한 비율에 포함된다면 일단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한 후 보궐 선거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후보자가 시행령이 정한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수에 대하여 상기의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문** 2회 모두 보궐위원으로 선출되었을 경우 재선출이 가능한가?

**답**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잔임 기간을 1회로 간주하므로 2회 모두 보궐위원으로 선출되었을 경우의 재선출은 불가능하다.

**문** 지역위원 자격으로서의 「지역」의 범위는?

**답** 동법시행령이 지역위원의 대상자를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까지 넓게 포함시키고 있는 취지로 볼 때 ‘지역’의 의미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단, 회의참석 여건과 학교발전에 대한 기여 및 관심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문** 학부모를 지역위원으로 선출할 수 있는가?

**답** 「법률 및 시행령」에 지역위원의 자격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조례」에도 공무원 결격사유 외에는 별도로 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므로 학부모라도 지역위원에 위촉될 수는 있다. 그러나 학부모위원과 별도로 지역위원 구성비율을 정한 취지로 보아 가능한 한 학부모를 제외한 지역사회 인사 중 학교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자를 지역위원으로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 지역위원의 선출권자는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인가 아니면 현재 임기 중인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인가?

**답**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서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요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임기개시 전이나 후의 위원으로 구분할 수 없으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59조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을 위한 위원의 선출방법과 순서만을 규정하고 있다.

즉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을 선출하고, 선출된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지역위원을 선출하여 학교운영위원회가 새로이 구성되는 것이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4조에서는 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조례」에서 위원선출시기를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경우 임기개시 10일 전까지, 지역위원의 경우 임기개시 전까지 선출하도록 규정한 것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임기만료로 인한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은 먼저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을 선출하고, 선출된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임기개시 전이라 하더라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위원을 선출함으로써 완료된다.

다만, 선출된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은 지역위원 선출의 권한은 있으나, 기타 학교운영위원으로서의 권한(위원회 출석, 발언, 심의 등의 권한)은 임기개시 전까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문** 소속 학교를 달리하는 경우 학교운영위원의 연임 여부?

**답** 연임은 동일 조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다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 되는 것은 연임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한 학교의 운영위원이 임기가 만료되거나 사직한 후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으로 선출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이다.

**문** 위원 정수와 입후보자 수가 같거나 적은 경우에 무투표 당선 여부는?

**답** 입후보자의 수와 위원 정수가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지 않는 한 무투표로 당선된다고 할 것이며, 미달되는 인원에 대하여는 추가 입후보 등록 등의 절차를 거쳐 다시 선출하여야 할 것이다.

**문**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법령에 위반하여 선출·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의 효력은?

**답** 법정조직은 근거법령에 의해 적법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위법하게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구성자체가 무효이므로 재선출·재구성되어야 한다. 위원선출에 대한 사전공고를 하지 않았거나 공고기간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 등은 선출절차에 '중대한 흠'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선출의 효력이 없다. 또한 지명에 의한 운영위원 선출행위는 민주적 대의절차에 의한 선출원칙에 어긋난 것으로 당연 무효라 할 것이며, 당사자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반면에 신입생 입학식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했다 하더라도 선출공고 등 적법절차를 거쳤다면 하자 없는 선출이라 할 수 있다.

**문** 운영위원으로 선출된 자에게 당선 사실을 통보할 때 누구의 명의로 하는가?

**답**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은 각각 선거(투표)에 의해 당선되어 그 사실이 공표되면 본인은 '당선 통지서'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보받게 된다. 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이 당선사실을 통보한다. 단, 지역위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학교장이 당선 사실을 통보한다.

**문** 운영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의 절차는 어떠한가?

**답** 법령 및 규정에 학교운영위원의 사퇴에 관하여 정한 바 없더라도 학교운영위원 본인의 희망에 의한 사임은 인정해야 한다. 사직을 원하는 위원은 간사 또는 위원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면 될 것이며, 이를 접수한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다.

**문** 운영위원의 보궐선출의 시기와 절차는?

**답** 위원의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조례」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할 것이며, 규정이 없는 경우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선출하여야 한다. 한편 보궐선출 절차는 위원의 종류와 관계없이 「법령 및 학교운영위원회규정」상의 선출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문** 당해 학교에서 4년간 운영위원을 하고 1년후 당해 학교 보궐위원으로 다시 운영위원을 할 수 있는가?

**답** 4년간 운영위원을 한 이후에는 2년후에 운영위원을 할 수 있다.

**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선출 시 회의 주재자는 누구인가?

**답** 조례나 학교운영위원회규정 또는 학교운영위원회 회의규칙 등에 이에 관하여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일반적인 회의운영 관례에 따라 출석위원 중 최연장자로 하여금 위원장 선출을 주재하도록 하는 것이 무난하다. 다만, 위원장이 궐위되어 보궐선출 할 경우 부위원장이 주재해야 한다.

**문** 운영위원회 구성 후 최초 임시회 소집 시기와 소집권자는?

**답** 위원이 선출된 직후부터 15일 이내에 학교장이 소집한다.

**문**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에는 위원의 자격을 상실하도록 되어있다. 이 때, '특별한 사유없이'의 구체적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또 3회 연속은 동일회기 중 3회 연속을 말하는가?

**답** 위원의 자격 상실은 위원의 신분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므로, '특별한 사유없이'라 함은 '사전 통지없이'로 보아야 할 것이다. '3회 연속'에서의 3회는 동일회기 중 3회가 아닌 3회의 회기를 연속하여 불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문** 운영위원 임기 중에 학생수가 증가했거나 감소했을 경우 위원 증원 선출 및 감원 여부는?

**답** 위원의 해당 임기는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학생수 증가로 위원을 증원하여야 할 경우에는 규정 개정 후 초과 인원에 대하여 보궐선출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학생수 감소로 위원을 감원하여야 할 경우에는 규정은 개정하되, 현 위원의 임기는 보장하고 학교운영위원회규정 부칙으로 경과조치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문** 학부모위원을 학년별로 배정하여 선출할 수 있는지 여부?

**답** 학부모위원을 학년별로 선출할 경우에는 학부모위원의 정수와 학년별 선출인원을 당해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에 반영한 후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년별로 직접 선출한다.

## Ⅱ.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 관련 서식(예시)

### [서식 1-1]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 학 부 모 위 원 선 출 공 고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기 ○○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 :

나. 장소 : ○○학교 ○○○

다. 기한 : ○○○○년 월 일 ~ ○○○○년 월 일

라. 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통(선출관리위원회에 비치)  
- 본인도장 지참

##### 2. 위원 선거

가. 장소: ○○학교 ○○○

나. 일시: ○○○○년 월 일

○○○○. ○. ○.

○○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 [서식 1-3] 학부모위원 선거인 명부

○ ○ 학교

연번	학생		선거인		서명 날인	비고
	학년/반	성명	관계	성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당해 학교에 2명 이상의 자녀가 재학하고 있는 경우 어느 한 자녀를 기준으로 명부 작성  
(예 : 최상급 학년의 자녀, 타 자녀는 비고란에 사유 표시)

[서식 1-4] 학부모(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 위촉(임명)장

위 촉 장 ( 임 명 장 )

성 명 : 홍 길 동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조에 의거 귀하를 201○년도 ○○  
학교학부모(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임명)합니다.

□ 기간 : 201○ . 3 . ○ ~ 업무종료 시 까지

201○ . 3 . ○

○ ○ 학 교 장

## [서식 1-5] 신원기록사항 조회 공문

## ○ ○ ○ ○ 학교

수신자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

(경유)

제목 학교운영위원 후보자에 대한 신원기록사항 조회

1. 귀청(시청, 구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0년 우리학교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한 아래 사람에 대하여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2의 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원기록사항을 조회하오니,
3. 우리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원활한 구성·운영을 위하여 ○월○일까지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 신원조회 연명부

연번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본적)	비고

끝.

## ○ ○ 학 교 장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협조자

시행 ○○○학교-일련번호 (2010.00.00.)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2010.00.00.)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 기안자전자메일주소입력 / 공개

※ 1. FAX에 의한 송수신 확인 가능

2. 지역위원으로 추천된 자에 대하여 사전 신원기록사항 확인은 곤란하지만 추천자는 되도록 사전에 확인하여 추천하는 것이 좋을 것임(당선된 후에 확인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여야 함)

## [서식 1-6] 학부모위원 후보 소개 및 선거 안내

학부모님께 알려드립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을 맞이하여 학부모님의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기를 바랍니다. 알려드릴 말씀은 지난번에 보내드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교(또는 본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서 학부모위원 입후보자를 접수한 결과 아래와 같이 등록되었습니다. 학부모님께서도 바쁘시더라도 첨부된 입후보자의 약력을 잘 읽어보시고 가급적 직접 내교하시어 선거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정상 직접 선거에 참석하실 수 없는 학부모님께서도 후보자의 약력을 참조하시어 아래 투표용지를 작성하여 학생 편에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입후보자 명단 : 붙임
2. 선거
  - 가. 일시
  - 나. 장소

년 월 일

○○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학년 투표용지〉

기호	입후보자성명	기 표 란
1	○○○	
2	○○○	
3	○○○	

○○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인)

※ 서신·우편·전자 투표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의 예시임

## [서식 1-7] 운영위원 당선자 공고

## ( )위원 당선자 공고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조 제○항에 의하여   년 일 ( ) 위  
원 선거에서 다음과 같이 (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공고합니다.

성 명	성 별	연 령	직    업	비    고

년    월    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서식1-8] 당선통지서

당 선 통 지 서

성명: ○ ○ ○

○ ○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 ○조에 의거 귀하를 제 ○기  
○ ○위원으로 선출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학교운영위원회○○위원선출관리위원장

## [서식 1-9] 국·공립학교 교원위원 선출공고

## 교원위원 선출 공고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기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선출방법 :
2. 입후보 등록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3. 등록장소 : ○○학교운영위원회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
4. 구비서류 : 가. 입후보 등록서  
              나. 추천서 1통(추천서를 구비하게 한 경우)

. . .

○○학교운영위원회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서식 2-1] 안건발의서

안 건 발 의 서

○○○○. ○. ○.

수 신 : 학교운영위원장

제 목 : ○○○안

위의 ○○○안을 규정 제○조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 임 : ○○○안 ○부. 끝.

발의자 ○○○ (인)

외 (인)

(찬성자 서명날인서 별첨)

## [서식 2-2] 건의사항 제출서

### 건의사항 제출서

○○○○. ○. ○.

수 신 : 학교운영위원장

제 목 :

위의 건의사항을 ○○○규정에 의하여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별 첨 : 건의서 ○부. 끝.

건의자(대표)

주소 :

성명 : ○○○ (인)

소개위원(대표) : ○○○ (인)

## [서식 2-3] 건의사항 소개 의견서

## 건의사항 소개 의견서

건의사항				
건의인	성명	(인)	주민등록 번호	-
	주소			
소개위원				
소개 연월일				
소개의견				

## [서식 2-4] 임시회 소집 요구서(위원)

### 임시회 소집 요구서

○○○○. ○. ○.

수 신 : 학교운영위원장

제 목 : ○○학교운영위원회(임시회) 소집 요구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학교운영위원회(임시회) 소집을 요구합니다.

1. 소집일시 :       년    월    일(요일)
2. 소집이유 :
3. 소집요구자 : ○○○위원 외 ○인

붙임 서명날인서 1부. 끝.

※ 재적위원 1/4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개최 7일전에 소집 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조례12조 제2항)

## [서식 2-5] 임시회 소집 요구서(학교장)

○ ○ ○ 학교

수신자 학교운영위원장  
(경유)

제목 ○○학교운영위원회(임시회) 소집요구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  
학교운영위원회(임시회) 소집을 요구합니다.

1. 일시 :    년    월    일( 요일) 00:00
2. 안건 :

○ ○ 학 교 장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협조자		
시행	○○○학교-일련번호 (0000.00.00.)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0000.00.00.)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 기안자전자메일주소입력 / 공개

[서식 2-6] 학교운영위원회(임시회) 소집공고

제○회 ○○학교운영위원회(임시회) 소집공고

○○○○. ○. ○.

○○학교운영위원 ○○○외 ○인(학교장)으로부터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으므로 ○○학교운영위원회 제○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회 ○○학교운영위원회(임시회) 소집을 공고합니다.

1. 일시 :       년    월    일( 요일) 00:00
2. 장소 :
3. 안건 :

년    월    일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 [서식 2-7] 본(임시)회의 회의록

제○회 ○○학교운영위원회(○○회)					
<b>본(임시) 회의 회의록</b>					
	<table border="1"> <tr> <td style="width: 50px;">위원장</td> <td style="width: 50px;">학교장</td> </tr> <tr> <td style="height: 30px;"></td> <td style="height: 30px;"></td> </tr> </table>	위원장	학교장		
위원장	학교장				
<p>□ 일시 : 201○년 ○○월 ○○일(○요일) ○시</p> <p>□ 장소 : ○○실</p>					
<p>□ 회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개회</li> <li>2. 국민의례</li> <li>3. 학교장 인사</li> <li>4. 위원장 개의 선언</li> <li>5. 보고사항</li> <li>6. 안건심의</li> <li>7. 산회선포</li> <li>8. 폐회선포</li> </ol> <p>※ 회의진행 순서에 따라 발언내용 및 상황을 기재</p>	<p>* 출석위원 : ○인 ○○○, ○○○, ○○○ 등</p> <p>* 출석교직원 : ○인 ○○○, ○○○ ○○○ 등</p>				

# 학교발전기금 조성 및 운영의 유의사항

## 1. 학교발전기금 제도의 의의와 역사적 배경

### 가. 제도의 의의

1920년 이후 독립운동의 방편으로 민족 지도자들에 의해 학교 설립이 주도 되었으며, 학교설립 후 학교경영은 지역의 독지가들에게 의존하거나 학부모들의 성금에 의하여 유지되었으며, 해방 이후에도 국가 재정은 학교 현장에 충분하게 지원되지 못하여, 지역사회 유지와 학부모들의 도움을 받아 운영되었다.

1970년대 후반부터는 국민들의 교육수요 증가와 급격한 경제발전에 따라 상당한 교육투자가 이루어졌으나, 1997년 말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이라는 국가적 경제 위기 상황으로 교육투자에 큰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아직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투자만으로는 다양한 교육수요자들의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많은 재정적 한계가 있다.

1998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학교발전기금 제도는 일부학교에서 부적절한 방법으로의 기금 조성 and 운용, 모집절차나 사용방법 등의 복잡성 및 경직성은 있으나, 단위학교 교육기자재 확충 및 학생복지 확대 지원 등의 부족한 교육재정 보전, 바람직한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나. 제도 도입의 역사적 배경

- 1) 정부수립 이후 학교 운영에 있어 기부금품(찬조금, 촌지 등)에 대한 문제는 교육재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어 옴.
  - 2) 1950~1960년대는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기부행위가 전후(戰後)에 취약한 교육재정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는 역할을 해 왔음.
  - 3) 1970~1990년대는 기부금이 이른바 ‘치맛바람’ 등으로 사회문제화 되면서 정부는 이를 제재하는 정책으로 일관해 왔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함.
    - 1970년 : 육성회비를 징수하는 대신 일체의 잡부금을 금지
    - 1983년 : 자발적인 찬조금품에 한하여 학교장의 관리를 허용
    - 1992년 : 각급학교 찬조금품 접수 금지 조치
- ※ 시·도 및 시·군 교육청에 ‘자발적 찬조금 접수창구’ 설치

- 1996년 : 육성회, 학부모회, 후원회만 기부금을 접수할 수 있도록 변경
  - ※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시행으로 행정기관(학교 포함)에서 기부금품 접수가 금지됨에 따른 조치
- 4) 이러한 과정에서 국민들의 기부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정부에 대한 비판 의식만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자, 교육부는 기부금을 제재해온 종전의 정책기조를 적극 조성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게 됨.
- 1997.12.31. '학교발전기금제도' 도입(초·중등교육법 제33조)
  - 1998. 2.24. '학교발전기금의조성·운용에 관한 사항 규정' (동법시행령 제64조)
  - 1998. 9.15. '학교발전기금조성·운용및회계관리에관한규칙' 제정
  - 1998. 9.17. '서울특별시학교발전기금의조성·운용및회계관리요령' 제정
  - 2001.6.1. '서울특별시학교발전기금의조성·운용및회계관리요령' 개정(1차)
  - 2007.9.1. '서울특별시학교발전기금의조성·운용및회계관리요령' 개정(2차)

#### 다. 관련법규 및 주요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초·중등교육법	<p><b>제32조(학교운영위원회 기능)</b>                      ③발전기금의 조성,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심의, 의결</p> <p><b>제33조(학교발전기금)</b>                      ①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②학교발전기금의 조성 및 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p>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p><b>제64조(학교발전기금)</b>                      ①조성방법                      ②발전기금 사용 목적                      ③학운위원장 명의로 조성 및 운용(교과부령에 따라)                      ④발전기금의 관리, 집행, 부수업무를 학교장에게 위탁 가능 등</p>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에 관한규칙(교과 부령)	<p><b>제1조 ~제11조</b>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기금의 운용, 회계연도, 회계방법, 결산 보고, 잉여금의 처리, 장부 등의 비치 및 관리, 회계기관 등</p>
서울특별시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 요령	<p>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에 관한규칙(교과부령)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p>

## 2. 학교발전기금 제도의 운영 성과와 문제점

### 가. 운영 성과

- 1) 긴요한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활동 지원 ⇒ 학교교육활동 활성화
  - 교육재정 지원이 열악한 상황에서 학교발전기금으로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를 확충하는 등 긴요한 교육환경 개선
  - 학생들의 다양한 학예활동과 복지증진을 지원함으로써 학교교육활동을 활성화하는 촉매 역할을 담당
- 2) 기금조성 및 운용의 투명성 확보 ⇒ 학부모 불신감 해소
  - 종전의 기부금품(찬조금)은 모금과정 및 사용결과에 대한 홍보 및 공개 부족으로 학부모들에게 불만과 불신을 준 사례도 있음
  - 학교발전기금은 조성방법 및 사용 등을 법령으로 구체화하여 기금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학부모들의 불신감이 점차 해소되고 있음
- 3)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교육적 욕구 수용 ⇒ 학교별 특색 있는 교육 활성화
  - 발전기금은 기본적 교육활동 외에 학부모들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수용 할 수 있어 학교별 특색 있는 교육활동을 활성화 할 수 있음
- 4) 초·중등분야도 민간재원 확충의 필요성 인식 확산
  - 발전기금은 대학에서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초·중등분야에서도 민간재원 확충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됨.

### 나. 문제점

- 1) 모금액을 할당하거나 직·간접적으로 강요하는 사례
  - 학부모회, 어머니회 등 학부모 단체를 중심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하는 모금
    - 가정통신문, 간부 학생 학부모가 전화 등을 통해 납부를 강요하거나, 학교운영위원장과 학교장 연명으로 가정통신문 발송
- 2) 법령에 정한 사용용도 외에 부적합한 용도에 사용하는 사례
  - 학교기본운영비 부족분, 공공요금 등을 학교발전기금으로 충당하거나, 기탁자가 정한 용도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사용계획과 다르게 운용
    - 교원들에 대한 선물비, 회식비, 각종 행사비 등
- 3) 학교운영위원회 의결 없이 발전기금을 강제로 모금하거나, 자생단체에서 음성적으로 기금을 모금하는 관행 잔존

- 회계연도 개시 전 발전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성하여야 함에도 학교운영위원회 의결 없이 조성하거나 학부모회 임원 등을 대상으로 모금

### 3. 학교발전기금 제도의 개선방안

학교발전기금제도가 기본적 교육활동 외에 학부모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수용하는 등 교육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지만, 일부학교에서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이 나타나고 있음.

교육현장에서의 부패는 도덕성을 그 존립기반으로 하는 학교에 대한 불신과 교육목적 달성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므로 음성적 모금활동을 차단하고 투명한 재정운용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

학교발전기금 제도가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어 학교발전은 물론 신뢰받는 교육풍토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제도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 기본적 교육활동비는 학교회계의 학교운영비로 충당하여 교육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학교발전기금은 기본적 교육활동 외에 학부모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추가적 경비에 한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만 조성
- 학교운영위원회 기능을 활성화하여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 수립, 심의·의결, 사용, 결산 등에 있어 절차의 적정성과 회계관리의 투명성 확보.

## 4. 서울특별시학교발전기금조성·운영및회계관리요령(요약)

### 가.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영의 기본방침

- 발전기금은 기부자에게 반대급부 없어야 하며, 기부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반하지 않아야 함.
- 발전기금은 학교기본운영비 충당을 위한 조성은 아니 되며, 학생 교육활동과 관련된 학교별 특색이 있는 교육사업 등 학부모들이 공감할 수 있는 순수한 교육목적을 위하여 조성하여야 함.
- 발전기금 중 모금금품과 자발적 조성금품은 사전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학교장 및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여 사용목적, 조성방법, 수입·지출 계획 등이 포함된 발전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후에 조성하여야 함.
- 발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고 통지하여 회계관리를 투명하게 하여야 함.

## 나. 학교발전기금의 종류

### 1) 기부금품

‘기부금품’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조성활동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개인·조직·단체 등이 반대급부 없이 자유의사에 따라 기부하는 금전 및 유가증권, 도서, 물품, 시설, 수목, 재산 등

### 2) 모금금품

‘모금금품’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특정한 목적(사업)을 위하여 발전기금 운용계획을 심의·의결 후에 일반인(개인, 조직, 단체 등으로 학부모 참여 가능)을 대상으로 모금한 금전 및 유가증권, 도서, 물품, 시설, 수목, 재산 등

### 3) 자발적 조성금품

‘자발적 조성금품’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발전기금 운용계획 심의·의결 후에 학부모들의 자발적 참여로 조성하는 금전 및 유가증권, 도서, 물품, 수목 등

## 다.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및 접수

1) 발전기금 조성 명의 :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2) 조성(접수) 방법

- 기부금품 : 발전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접수 가능
- 모금금품 : 발전기금 운용계획 심의·의결 후, 학교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개인·조직·단체 등 일반인으로부터 모금 접수  
(바자회, 전시회, 알뜰매장, 학교축제, 각종행사 등을 통한 모금)
- 자발적 조성금품 : 발전기금 운용계획 심의·의결 후, 당해 학교 학부모 개인으로부터 가정통신문 등 조성 안내문(홍보)을 통한 모금 접수
  - ※ 학부모만을 대상으로 하는 자발적 조성금품은 학부모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학생 교육활동에 필요한 사업이나 학교별 특색 있는 교육사업 등 학부모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사업에 한하여 조성.  
(학교교육시설 보수 및 확충 또는 교육용기자재 구입 목적 조성 불가)

### 3) 접수 제한 대상

-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기부금품
- 유지·관리에 인력 또는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차량, 건물 등의 기부.  
(다만, 관할청의 승인을 얻으면 접수가능)
- 각종 선거·선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부
- 교직원복지(교직원 연수비, 회식비, 체육복구입비 등)를 목적으로 하는 기부
- 기타 법령이나 학교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는 기부

### 라. 학교발전기금의 사용 용도

- 발전기금은 다음 각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4조)
  -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 마. 학교발전기금 조성(접수)시 금지사항 및 조치

- 학년별, 반별, 개인별 등으로 할당하여 조성하는 행위
- 기부액의 최저·최고액을 정하여 조성하는 행위
- 사전에 기부 희망액을 조사(파악)하거나 신청 받는 행위
- 기부를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 발전기금 기탁서, 기부서를 일괄 배부하는 행위
- 발전기금 조성 안내문(가정통신문)을 교사나 학생을 통하여 배부하는 행위  
(학부모에게 직접·우편으로 안내하거나 학교 홈페이지를 이용)
-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자발적 조성금품의 경우 기금 조성 및 홍보에 학부모, 학부모단체, 교사, 학생을 동원하는 행위
  - 학부모회, 어머니회, 명예교사회 등 학부모 단체에서 발전기금을 조성  
(모금)하거나 발전기금을 빙자하여 회비를 모금하는 행위
  - 교장 등이 학부모 개인 또는 학부모회·어머니회 등 학부모단체의 임원  
이나 회원에게 자발적 기부금을 내도록 유도하는 행위
-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자발적 조성금품의 경우 학부모에게 개별적으로 접촉하거나 전화 등을 통하여 기부를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 기탁서, 기부서에 자녀(학생)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접수하는 행위
- 기타 학부모의 자발적 의사에 반하는 행위

## 바. 학교발전기금에 대한 학교운영위원회 기능

- 국·공립 및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초·중등교육법 제32조)
  - ※ 학교발전기금에 대한 모든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임.

## 사. 학교발전기금 회계 관련

- 학교발전기금회계 별도 설치
- 출납명령기관
  - 출납명령기관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학교장이 명령기관이 될 수 없음)
  - 출납원 : 당해 학교회계 출납원
- 학교발전기금 회계 계좌(통장)에는 출납원의 직인·사인을 모두 사용
- 학교발전기금은 조성 전에 반드시 위원장이 사업명, 조성액, 지출시기 등이 포함된 발전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고, 기금이 조성되면 그 수입액이 목표액과 다를 경우 사용변경계획에 대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후에 집행
- 국·공립학교는 발전기금회계에서 학교회계로 전출이 가능하나, 사립학교는 학교회계로 전출 불가
  - ※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2(학교회계의 설치)의 규정에 따라 국·공립의 초, 중, 고, 특수학교에만 학교회계 설치
  - 학교발전기금은 학교회계에서 직접 접수할 수 없으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전출 불가
- 외부로부터의(학부모, 독지가, 단체 등) 장학금, 운동부 후원금 등 각종 기부금 성격은 발전기금회계로 처리하여야 하며, 물품 및 재산은 발전기금 접수절차에 따라 기탁서 작성,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물품·재산 관리대장에 등재·관리

## 학교의 자율성·책무성 제고를 위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안내

- 지 도 : 정승운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지원국장  
오대수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지원과장
- 기획·검토 : 용석홍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설립기획 담당서기관  
류경숙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지원과 행정주사  
나용진 상암고등학교 행정실장  
김종안 서부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박미연 강남교육청 도성초등학교 행정실장  
김지원 강서교육청 송화초등학교 행정실장  
이규엽 중부교육청 신당초등학교 행정실장
- 자 문 : 예성옥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정책과 장학관  
김미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정책과 장학사

발행일 : 2010년 2월

발행처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지원과  
110-781 서울시 종로구 송월길 28

전화 : 02)3999-429

발간번호 : 서울교육 2010-17

인쇄처 : 경인정보문화사 (02-741-5941~5)